

Legal Times

www.legaltimes.co.kr

08
2018

이 달의 변호사
세월호 국가배상 이관
신용락 변호사

심층추적 대법관 후보 3인의 사법관
로펌 합병 성공의 10가지 과제
2018 상반기 M&A 리그테이블

리걸타임즈



김이태 변호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은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계속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투자 가능성

한국기업의 경우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등을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통하여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면, 한국기업도 다른 외국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 구조를 검토하기 위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해당 국가에 외국인투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그 동안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률 조항에 의하면 적어도 법제도상으로는 북한에서도 외국인투자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Korea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가 2016년 5월에 펴낸 'Investment Guid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 의하면, 북한은 외국인투자자의 북한 투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2014년 기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 27개 국가와 체결),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2014년 기준 러시아, 스위스 등 14개 국가와 체결)을 체결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보호 법률 조항

구분	법률 조항
외국인투자 보호 및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내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함(헌법 제16조).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함(헌법 제37조).
국유화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 또는 몰수하지 않음.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국유화 또는 몰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 줌(외국인투자법 제19조).
투자금 회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투자자는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제한 없이 북한 밖으로 송금할 수 있음(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영법 제42조, 합작법 제16조, 외국인기업법 제21조). 외국투자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을 북한 밖으로 세금 없이 송금할 수 있음. 투자재산은 세금 없이 북한 밖으로 내갈 수 있음(외화관리법 제29조).

외국인투자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은 각 분야별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북한에 설립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을 말하고, '외국기업'은 북한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을 말한다(외국인투자법 제2조). 위 Investment Guide에 의하면, 북한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2014년 기준 371개라고 한다(특수경제지대 제외).

2014년 기준 외투기업 371개

외국인투자기업 중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고 지분(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고, 합작기업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 투자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외국측 투자자의 지분(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외국측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및 해당 시행규정은 해당 기업의 창설, 등록, 출자, 영업허가, 관리기구, 결산 및 분배, 해산 및 청산,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베트남, 미얀마 등 체제전환국의 초기 단계의 외국인투자법제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법이 있더라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하위규정 미비 등 완결성 부족
”

도 하위규정 등의 미비로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그 자체로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투자 선례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특성에 따른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및 용어의 모호성, 감독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에 따른 위험도 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점차 투자 사례도 축적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투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북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정비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에 기초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련 법제, 경제개발구 관련 법제를 발전시킨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투자를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반도의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도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LT**

김이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	
구분	법률
외국투자기업 창설·운영 제도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 제도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특수경제지대 관리·운영 제도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개성공업지구법, 경제개발구법
부동산 임대 제도	토지임대법
분쟁해결, 기업해산 및 파산 제도	대외경제중재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기타 관련 법률	외화관리법, 세관법, 환경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원산지명법, 출입국법, 무역법, 가공무역법, 지하자원법 등